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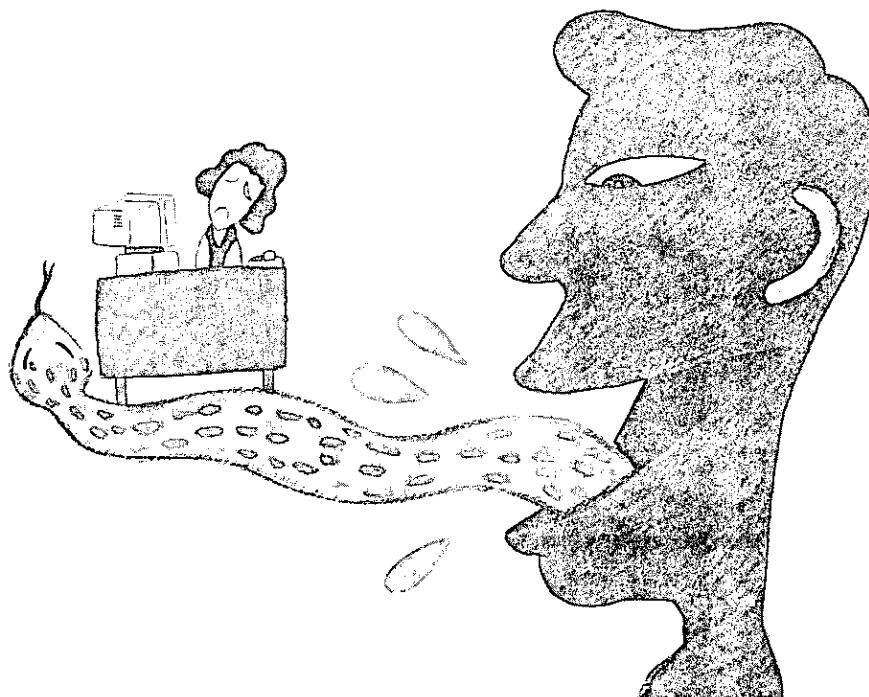
박은정

이화여대 법정대 교수이며,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이다.

성(性)의 프리즘을 통해본 법 언어

-우 조교 성희롱 사건 항소심을 보고

법은 남자들이 만들었다. 더욱이 언어와 그에 따른 법적 논증까지 남성의 관점이나 경험으로 가득 차 있다.
주류의 법 언어에 여성의 경험을 정합시키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우리가 법으로부터 도망갈 수는 없는 일.
어렵다 하더라도 여성의 경험과 관점을 더 많이 법에 집어넣는 데 나설 때다.



‘여성의 해’, ‘여성의 주간’이 있는 것은 고무적이지만 참말이지 진정 여성을 위해서라면 ‘여성의 세기’가 지정되어도 모자람을 우리는 안다. 지구촌에서 여성이 처한 현실의 참담함은 유엔 차원에서도 거듭 거론되고 있다. 유엔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특별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세계 성인 인구의 절반인 여성은 공식적인 노동력의 3분의 1을 차지하면서, 실제로 전체 노동시간의 3분의 2에 가까운 시간을 일하고 그 노동의 대가로 세계 수입의 10분의 1을 받으며, 세계 재산의 100분의 1을 소유하고 있다고 한다. 설상가상으로 여성들이 이런 무보수 노동을 수행하지 않는다면 빈곤 가족의 수는 현재보다 2.5배가 늘어날 것으로 추

정된다고 밝히고 있다.

남자들이 만든 법

여성문제에 대한 근원적인 해결책은 남녀 고용평등법의 제정이나 성폭력 방지를 위한 특별법의 추진과는 상관없는 일인지도 모른다. 사회에서 가장 멀 헤택받은 사람들, 놀린 집단들의 주제에 법이 진정으로 부응하기 위해서는 그들 일상의 예삿이야기, 그들의 알려지지 않은 경험을 직접 정의원칙의 한 원천으로 삼고자 하는 인식의 대전환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여성문제는 사회의 혁명적 총체적 지각변화를 요구한다. 그러나 법이

본질적으로 그러한 변화에 복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친근함의 표현을 성적 괴롭힘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 폐소판결을 한 우조교 성희롱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에게 반감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우조교측 증인의 진술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 증인은 짐작컨대 성희롱의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거나 아니면 그 진상을 비교적 소상히 알 만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 여성주의 법 이론은 경험을 매사에서 이론의 재구성을 위한 중요한 발판으로 삼는다. 반면 주류의 법 이론은 경험의 요소를 편견으로 중립성의 달성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간주한다. 강간이나 성희롱을 당한 여성의 경험이 범죄나 손해에 대한 남성적 구성관점에 도전할 비판적 능력을 쌓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객관적 판단을 허리게 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는 것이다. 반면 강간이나 성희롱의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를 들려싼 여성의 행동에 대한 온갖 신화에 의해 편견에 사로잡혀 있을 터인데도 말이다.

법은 막강하고 권위적이고 명령적인 언어다. 우리는 법으로부터 도망갈 수 없다. 법치주의라는 말은 오늘날 단순한 법률적 개념이기를 넘어서서 문화적 차원의 그것을 뜻하게 되었다. 법을 누가 만들었는가? 남자들이 만들었다. 그렇다면 법 언어와 그에 따른 법적 논증은 성적으로 중립적인가? 그렇지 않다. 법 언어는 남성의 관점, 남성의 이미지, 남성의 경험으로 가득 차 있다. 사법적인 시각이 남성적인 예는 무수히 많다. 예컨대 임신은 개인적이고 자의에 의한 것으로, 그리고 어떤 식으로든 직장과는 무관한 경험으로 그려져 있다. 강간의 경우 피해자가 동의했는지를 판단할 때 결정적인 것은 여성이 동의했는가에 대한 남성의 관점이다. 매춘에 대한 법의 인식 관점은 뭐니뭐니 해도 학생자가 없는 여성에 의한 범죄라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법적으로 가정의 본래 모습은 남성이 가장이며, 여성은 그에 의존하는 존재로서 그려지며 그렇지 않은 가정

은 비정상적인 실체로서 그려진다.

개별법 영역의 곳곳에 남성적 관점과 경험에 의존하고 있는 무수한 언어망이 둘러쳐 있음은 물론이다. 평등, 노동, 손해, 손상, 시장, 계약, 정당방위 등의 개념이 구사되는 법영역에서 여성의 관점은 빠져 있다. 평등 정의를 적용하는 법은 교육받고 사회화된 남성들, 그러므로 이에 근접하는 남성 못지 않은 여성들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불법행위법은 손해나 그에 대한 배상 등의 기준을 경제적 가치의 의미로 환산되는 일로부터 구하고 있다. 그러므로 심적 고통이라든가 정신적 손해 등과 같은 비경제적 손해에 대해서는 – 그러한 손해 유형이 여성쪽에 더 연관돼 있는 바 – 법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낸다. 계약법 원리는 남성 지배의 시장을 전제로 한 것이다. 합리적이고 타산적인 인간상이 전제가 되는 이 법세계 안에서, 약자에 대한 필요한 도움을 준다는 의미의 복구개념이나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교정적 사각은 계약법에 대한 중대한 일탈이요, 그러므로 예외를 뜻한다. 노동법은 무엇보다도 남성 노동자를 전형으로 삼고 있다. 이 법은 기본적으로 가정 밖의 임금노동에 향해 있다. 노동법의 개정은 압도적으로 많은 여성들이 종사하는 일에 대해서는 침묵한다. 형법에 있어서 우선 여성의 범죄는 이중적으로 이상한 것으로 비쳐진다. 정당방위에 관한 법리는 남성의 관점에서의 위협, 반응, 상당성을 논하고 있다. 가족법 원리는 남성이 가장이 되어 있는 이상 가정에로의 유도 및 제한을 표현한 것이다.

대립과 갈등의 법 언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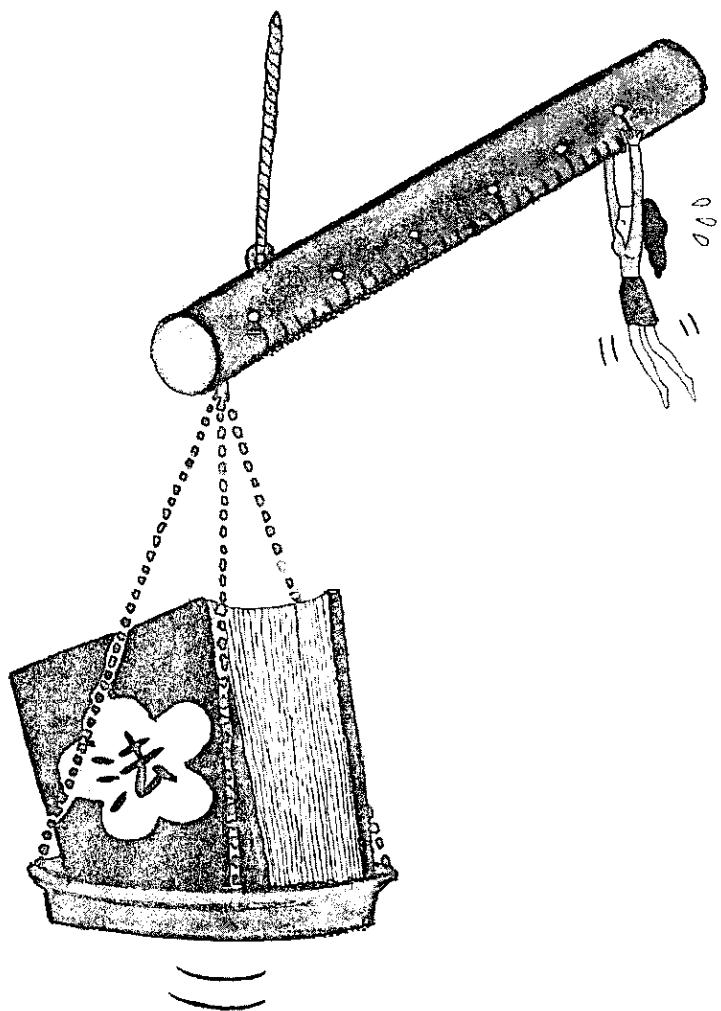
오늘날 주류의 법 언어는 어떠한 특성을 지니는가? 무엇보다도 개인성의 언어, 중립성의 언어라는 특성이다. 이러한 언어망이 던져진 곳에서 법과 국가의 사명은 타인에 대한 배려나 연민을 증진시키기 위해 구조나 제도를 바꾸는 일과 거리가 멀다. 자유로운 선택의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이 오늘날 개인주의적 자유주의 법체계 하의 미덕일 뿐, 자유로운 선택의

결과인 고통, 공포, 불안 등을 돋는 일은 법 밖에 놓인다.

주류의 법 언어는 또한 대립과 갈등의 언어이다. 대립하는 이익으로 표현되는 서구 자유주의 지성사에 점철된 이분법 - 문화/자연, 정신/육체, 이성/감정, 공/사, 사회/가정, 남/녀... - 의 한 편을 법은 받아들였다. 법 가치로 받아들여진 쪽은 승자가 됐고 그 반대 쪽은 패자가 됐다. 그 결과 법이라는 공식언어는 이 이분법에서 가치폄하된 쪽에 대해 침묵하게 됐다. 법적 상황을 권리의 침예한 대립상황으로 보는 데 익숙한 법 언어는 이슈에 대해 대립된 법 언어를 조장함으로써 타방에 대해 이해가능성을 제한한다. 그것은 사회문제를 비대립적 가능성의 관점으로 읽는 방법을 법 사고로부터 몰아낸다. 그것은 패자와 승자가 분명해지지 않으면 법은 있으나마나 한 것이라고 여기도록 만드는 것이다.

예컨대 출산의 상황은 한편으로는 프라이버시 내지 신체에 대한 자기통제권으로서의 임산부의 권리와 다른 한편으로는 태아의 권리의 충돌상황으로, 혹은 임산부의 권리와 아버지의 권리 충돌상황으로 법화(法化)되고 만다. 그러나 가족성원들을 위시하여 모든 당사자의 안전, 필요, 미래가 예민하게 얹혀 있는 출산이라는 사건을 단순한 대립상황으로 포착하는 발상 자체가 이미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태아는 엄마가 없는 거기에 있지도 않고 있을 수도 없다면, 이때 한 당사자에게 일어나는 일이 다른 당사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은 그들이 충돌관계에 있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공생관계로 연결되어 있음을 말해줄 뿐인 것이다.

주류의 법 언어가 경험의 요소를 부정적으로 취급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앞에서 이미 설명했다. 법 언어체계에 여성의 경험을 정합시키는 일은 쉽지 않다. 포르노 이용자에 대한 도덕적 해악만을 문제삼는 음란법 원리 속에다가 어떻게 폭력적 포르노 세계에 사는 여성의 경험을 정합시킬 수 있겠는가? 프라이버시나 선택이라는 수사학이 난무하는 속에서 어



떻게 원한 임신과 원하지 않은 임신의 차이를 정합시킬 수 있겠는가? 폭력 앞에 '가정 내'라는 단서를 붙이는 형법 안에다가 어떻게 매 맞는 아내의 심리적 경제적 현실을 정합시킬 수 있겠는가? 객관적 증인이 없는 닫힌 문 안에서 일어난 성폭행을 어떻게 증거법상의 증명요구에다가 정합시킬 수 있겠는가?

거듭 말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법으로부터 도망갈 수는 없다. 결론적으로 여성의 경험, 여성의 관점을 법의 목소리에 보다 많이 집어넣어야 한다. 그 일이 어디 말처럼 쉬운 일이겠는가? 우조교 성희롱 사건 항소심을 거쳐 앞으로 헤쳐나가야 할 길이 산 넘어 산인 것이 분명하다.

5·18 관련 특별법 전문

지난 7월 18일, 5·18 내란 주동자들에 대한 검찰의 '공소권 없음' 결정은 쿠데타 세력의 행위를 '법적으로' 정당화시켜줌으로써 불법적 반인륜적 행위의 재발 가능성까지 높여줬다. 이에 지난 7월 31일 고려대를 시작으로 전국의 대학 교수들이 검찰 결정의 부당성을 지적, 결정을 즉각 취소할 것과 정부와 국회에 대해서는 특별법 제정 및 특별검사제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아울러 지난 8월 24일에는 민교협이 「광주 민주화운동 진상 규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헌법 파괴적 범죄 등의 공소시효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결의대회를 통해 첫째, 검찰은 5·18 관련 피고소·고발인에 대한 '공소권 없음' 결정을 취소하고, 5·18의 발판이 된 12·12 군사쿠데타에 대해 재수사하여 기소할 것, 둘째, 현법재판소는 5·18 관련 헌법소원을 받아들일 것, 셋째, 정부와 국회는 국제관례상 공소시효를 인정하지 않는 불법적·반인륜적 내란 주동자에 대해 대학 교수들이 제안한 특별법안을 채택, 제정하여 반드시 이들을 처벌할 것 등을 천명했다. 한편, 참여연대 공익소송센터에서도 5·18 광주민주항쟁연합과 공동으로 「특별검사 임용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입법 청원한 바 있다. 이를 5·18 관련 특별법 전문을 살펴본다.

광주 민주화 운동 진상 규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입법청원의 요지

1.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특별위원회의 설치

-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하여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 등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 특별위원회는 국가로부터 독립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의 추천을 받은 변호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법률학 교수 중에서 대통령이 5인의 위원을 임명하도록 한다.

2.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과 그 결과의 공개

- 특별위원회는 광주민주화운동의 배경과

과정, 그 진압과정에서 저질러진 범죄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한다.

- 특별위원회는 진상규명활동을 종료하는 즉시 그 결과를 관보 등을 통하여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한다.

3.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범죄자에 대한 고발 등

- 특별위원회는 진상규명의 결과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면 이를 검찰에 고발하여야 한다.

4. 벌칙의 규정

- 특별위원회 활동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의 명령이나 요구에 불응하는 자에 대한 벌칙규정을 둔다

제안이유

1. 광주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현대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사건으로 기억하고 있는 만큼 그 배경과 경과, 그 진압과정 등에 대하여 명확하게 진상을 규명함으로써 희생자 및 유가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정의로운 법치사회를 확립하는 한편 한국 최현대사의 오점을 제거함으로써 민족정기를 드높일 것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2. 이미 검찰이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범죄

자들에 대하여 불기소결정을 내린 만큼 현재의 국가기구를 가지고는 범죄자의 처벌은 물론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드러난 만큼 이 법의 제정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진상규명을 위한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 등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특별위원회는 그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검찰은 물론 기존의 법조계로부터도 어느 정도 독립되어 있는 변호사단체, 즉 대한변호사협회의 추천을 받아서 국가원수인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문민정부를 표방하는 현 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직접 특별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특별위원회의 위상을 매우 강화하는 한편으로 현 정부가 진정으로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과 그 희생자 및 유가족의 명예회복에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알림으로써 문민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한편 특별위원회의 임무는 진상규명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수많은 자료와 증거를 다루기 위하여 5인 정도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특별위원회의 임무는 광주민주화운동 및 관련 범죄에 대한 진상규명이고 이것은 온 국민의 관심사인 만큼 그 결과는 반드시 모든 국민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또한 온전한 진상 규명을 위해서는 관계 국가기관의 긴밀한 협조가 요청되며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 및 자료의 조사를 위해서는 관계인에 대한 소환조사나 자료 요구 등은 필수적이므로 특별위원회의 이와 관련한 요구들에 강제력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관계기관의 협조의무를 규정하여야 함은 물론 특별위원회의 요구에 불응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이 요구된다.

4. 특별위원회의 또 다른 임무는 진상규명 활동의 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에 관련 범죄자를 고발하도록 한다. 이는 피해자의 고소나 일반인의 고발과는 달리 상당한 무게를

가질 것으로 생각된다.

5. 특별위원회는 진상규명활동의 결과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진상규명 결과를 공표하는 즉시 해산되는 것으로 하고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어 고발하는 경우에는 당해 고발사건의 처리가 종결되는 때에 해산되는 것으로 한다.

광주민주화운동 진상 규명 등에 관한 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한 광주민주화운동의 배경과 과정, 그 진압과정 등에 관하여 정확한 진상을 규명함으로써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 피해자 및 그 유가족 등의 명예회복과 정의로운 법질서의 확립 및 국민의 인권보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별위원회의 구성) ①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상 규명을 담당하기 위하여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 등을 위한 특별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제3조(위원의 자격) 위원은 5년 이상 다음의 직에 있던 자 중에서 임명한다.

1. 판사 검사 변호사

2.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대학의 법학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자

제4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단 국공립대학의 교원은 제외한다.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

한 자

3.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국회의원이었거나 정당원이었던 자

5.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사건에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로서 관여하였던 자

제5조(위원의 임명절차) ① 대통령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한변호사협회에 위원 정수의 2배수에 해당하는 후보자를 추천해 주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② 대한변호사협회는 전항의 추천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후보자 명단을 대통령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대통령은 대한변호사협회의 후보자 명단을 송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후보자 중에서 위원을 임명하고 그 사실을 관보에 공시하여야 한다.

제6조(사무실) 위원회가 짐무를 하기 위한 사무실은 서울지방검찰청에 둔다.

제7조(위원회의 진상규명활동) ① 위원회는 광주민주화운동의 배경과 과정, 그 진압과 정등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활동을 수행한다.

② 위원회는 전항의 활동을 위하여 관계 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지원 요청을 받은 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광주민주화운동 관계자를 소환할 수 있고, 관계인에 대하여 각종 자료 및 증거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④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청문회 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이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진상규명 결과의 공표) 위원회는 전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수행한 진상규명활동의 결과를 관보에 공표하고, 그 공표를 한 사실과 그 요지를 3개 이상의 중앙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9조(범죄혐의자에 대한 고발 등) 위원회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진상규명활동의 결과

특별검사 임용 등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특별검사와 그 보조자의 임명, 직무범위, 신분보장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별검사의 직무) 특별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담당한 사건에 관하여 다음의 직무와 권한이 있다.

1. 해당 범죄의 수사와 공소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2. 해당 범죄의 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의 지휘·감독

3.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의 확보

제2장 특별검사의 임명

제3조(본법 적용의 대상) ① 특별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범죄에 관련하여 임명된다.

1. 대통령, 국무총리

2. 정부조직법 제29조에 따른 행정 각 부의 장관 및 차관

3. 정부조직법이 정하고 있는 각 처와 청의 청장, 감사원장, 국가안전기획부장

4.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장

5. 법관, 검사

6. 대통령선거를 위하여 조직된 전국적 선거운동위원회의 주요간부

7. 전 1호 내지 6호 직위에 있었던 자 및 그 배우자 또는 직계 가족

② 전①항 1호의 경우 내란 외화의 죄를 제외하고는 대통령의 재직기간동안 대통령은 소속당하지는 아니하나 수사는 진행할 수 있다.

③ 전①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들에 대한 당해사건에 관하여 검찰의 불기소처분은 특별검사 임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4조(특별검사 임명하는 경우) ① 특별검사는 제3조의 적용 대상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임명된다.

1. 국회가 스스로 통상의 검찰에 의하여 공정한 수사가 어렵다고 판단한 때

2. 재판 중 발견한 중대한 범죄를 당해 재판

부가 관할 법원장을 통해 검찰총장에 수사를 촉구하여도 수사에 착수하지 않아 국회에 통보해 온 때

3. 대한민국에 5년이상 거주한 18세 이상의 국민 5만명 이상이 일정한 범죄의 수사에 관하여 특별검사 임명을 연서로써 국회에 청구해 온 때

② 전항의 1호에서 특별검사 임명의 발의는 국회의원 30인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③ 전항의 2호에서 법원장은 당해 재판부의 수사촉구 건의를 묵살할 수 없으며, 검찰총장이 수사촉구를 받고도 10일 이내에 수사 착수를 이행하지 않으면 국회에 수사촉구서를 첨부하여 특별검사임명요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전항의 3호에서 다수의 청구인 가운데 5인 이내의 연락발을 대표자를 지명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제5조(특별검사 임명의 거부) ① 제4조의 제①항의 각호에 따른 특별검사 임명의 요청이 있더라도 국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다.

1. 특별검사의 임명을 요청한 사항이 제3조에 의하여 본법의 적용대상에 관한 범죄가 아님이 명백한 때

2. 특별검사의 임명을 요청한 사항이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이거나 범죄의 내용이 전혀 특정되지 않는 것임이 명백한 때

3. 특별검사의 임명 요청이 그 대상에 관한 범죄 내용이 극히 사소한 것임에 비하여 오로지 개인적 사생활을 침해하고 명예를 훼손할 목적인 것임이 명백한 때

② 전항의 거부는 제8조 ⑥항의 결의 정족수에 의하여 할 수 있다.

③ 전항의 거부에 대하여 특별검사의 임명을 요청한 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6조(특별검사의 임명자격) 특별검사는 10년 이상 다음의 직에 있던 자 중에서 임명한다.

1.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자

제7조(특별검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검사로 임명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국회의원이었거나 정당원이었던 자

5. 당해 사건 또는 관련사건에 판사·검사·변호사로서 관여하였던 자

제8조(특별검사의 임명절차) ① 국회는 위 제4조 제①항의 각 청구가 있을 때에는 특별검사를 선출하여야 한다.

② 국회에서 특별검사를 선출할 때에는 반드시 대한변호사협회에 후보자를 5인 이내에서 추천해 주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③ 대한변호사협회는 위 추천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후보자 명단을 국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④ 특별검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추천한 5인 가운데서 1명을 선출 하며 이 경우 최다득표를 얻은 후보자를 특별검사로 한다.

⑤ 특별검사의 선출은 국회법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결의로 한다

⑥ 전⑤항의 국회 법사위원회와 본회의의 결의는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1의 결의로 한다.

제3장 특별검사의 권한과 임무

제9조(특별검사의 책임) 특별검사는 국회의 법사위원회 또는 본회의의 결의에 의하여 수사와 처분의 경과에 관하여 해당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서면 또는 구두로 보고할 의무가 있으나 누구에 대해서도 이 법에 의한

해임등을 제외하고는 그 책임을 추궁당하지 아니한다.

제10조(특별검사에 대한 감독) ① 특별검사는 이 법에 의한 직무를 행사함에 있어서 누구로부터도 부당한 압력과 영향을 받지 않는다.

② 특별검사의 직무상 행위에 대한 감독은 국회 법사위원회가 행한다.

③ 국회 법사위원회가 전②항에 따른 감독을 할 때에는 재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결의로 한다.

제11조(특별검사의 직무제한과 확장) ① 국회가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결의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특별검사의 성명

2. 특별검사가 담당할 사건의 개요

3. 특별검사가 담당할 사건의 대상

② 특별검사가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 국회가 당초 담당하도록 결의한 내용과 다른 범죄가 드러나거나 또는 수사 기초의 대상을 추가, 변경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새로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전 ②항의 동의는 국회 법사위원회의 재직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결의로 한다.

제12조(사무실) 특별검사가 집무를 하기 위한 사무실은 서울지방검찰청에 둔다.

제13조(보조자 파견요청등) ① 검찰총장 및 경찰청장은 특별검사가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보조자를 요청해 올 경우 그 요구에 따라 그 소속의 직원을 파견하여야 한다.

② 제①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은 파견 기간 동안 특별검사가 직무상 발한 지시 명령에 따르어야 한다.

③ 제①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이 특별검사가 직무상 발한 지시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특별검사는 검찰총장 및 경찰청장에게 그 직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④ 특별검사는 자신이 수사하는 범죄에 관하여 보조하는 자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국가기관의 협조의무) ① 특별검사는 자신이 수사하는 범죄에 관하여 수사상 필

요한 경우는 다른 국가기관에 사실조회, 문서 송부등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요구를 받은 국기관은 이를 거절할 수 없으며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특별검사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특별검사가 수사하는 사건에 관하여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있는 경우 그 불기소결정에 관한 항고, 재항고, 재정신청절차는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제16조(준용규정) ① 형사소송법 제2편 제1장(수사) 제2장(공소)을 준용한다.

② 특별검사의 권한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목적과 규정과 모순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형사소송법과 검찰의 제규칙을 준용한다.

제4장 특별검사의 신분보장

제17조(공무원신분) ① 특별검사는 국회의 선출 결의후 국회의장 앞에서 공정한 직무집행을 선서한 때로부터 국회의 해임 결의가 있을 때까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선서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특별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 법령에 의하여 공무로 종사하는 자로 간주한다.

제18조(해임) 특별검사가 헌법 기타의 법령에 위반하여 그 직권을 남용하거나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현저히 불공정한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국회는 특별검사를 해임할 수 있다.

제19조(신분보장) 특별검사는 탄핵 또는 금고이상의 형을 받거나 국회의 해임결의가 있기 전에는 파면되지 않는다.

제20조(보수등) ① 특별검사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하고 그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특별검사의 지위는 존중되어야 하며 그 보수는 직무와 품위에 상응하도록 정하여야 한다.

③ 특별검사 및 그 보조자의 출장에 관한 여비, 숙박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벌 칙

제21조(특별검사의 수사방해죄등) ① 특별검사의 지휘에 불응하거나 수사를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특별검사가 무단히 사건 수사내용을 공표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특별검사의 지원요청에 불응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2조(위법한 특별검사임명청구등)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징역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① 제4조 제1항 2호에서 법원장이 당해 재판부가 요청해 온 수사촉구를 검찰총장에게 하지 않거나 그러한 사실을 통보하여 특별검사임명을 국회에 요청하지 않은 때

② 제4조 제1항 3호에서 일정한 범죄의 수사를 촉구하는 국민의 서명을 위조한 때

제6장 공소시효등

제23조(공소시효완성되지 않은 사건) 이 법의 시행당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사건에 대하여는 이 법에 따른 특별검사를 임명할 수 있다.

제24조(공소시효의 정지등) ① 본법 제3조의 자가 그 재직 이전 또는 재직 중에 범한 범죄에 관하여 특별검사가 임명되는 경우에는 그 재직기간은 형법 기타 특별법에 따른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한다. 본법 제3조에 규정한 직위를 순차로 역임하는 경우에는 그 재직기간 전체에 걸쳐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한다.

② 본법의 적용대상인 자가 본법에 따른 특별검사 임명 청구가 있거나 특별검사가 임명되어 조사 중인 상태에서 해외로 나가 체류 중인 경우에는 그 체류기간동안 형법 기타 특별법에 따른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한다.

제25조(본법의 효력발생시기) 본법은 공포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여론조사 바로 읽기

통형식

최근 언론을 비롯 정치 및 사회운동 영역에서 사회통계 여론조사들이 쏟아져나오고 있다. 특히 진보적 사회운동진영 내에서도 그 필요성이 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이용하면서 이해와 부족으로 오류를 범하기도 한다. 여론조사의 바른 자리매김, 그 실체를 쫓는다.

O 리나라에서도 최근 선거를 치르면서
T 정치와 사회운동 영역에서 사회통계
여론조사에 대한 관심이 부쩍 커지고 있
다. 그러나 사회통계조사는 마케팅, 소비
자 행동분석, 조직진단 등 다른 영역에서
는 이미 실천(실용)적 목적으로 활용된
지 오래다.

특히 진보적 사회운동진영에서는 통계 및 조사 방법이 진보적 사회과학자들의 방법론에 대한 적극적 요청에 의해서라 기보다는 선거라는 상황을 맞으면서 그 필요성을 더 느끼는 것 같다.

여론조사 이용시 나타나는 문제들

그러나 진보적 진영에서 사회통계조사

가 이용되면서 몇 가지 문제점이 나타난다. 하나는 사회통계조사에 대한 냉소적 태도이고, 다른 하나는 적극적으로 통계 조사를 활용하려고 하여도 전문적 지식이나 통계조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으로 인해 범하는 오류의 문제다.

먼저 냉소적 태도는 주로 과학활동을 현상의 기저가 되는 객관적 실재(본질)의 규명을 추구하면서 본질 규명은 직관과 같은 인간의 사유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입장에서 나타난다. 여기서 통계조사는 본질과 대비되는 현상파악을 위한 방법이며, 사회통계적 사실 발견은 본질을 파악하는 테 단서 정도만 제공할 수 있을 뿐이라는 생각을 무의식중에 갖고 있는 것 같다. 따라서 역론조사와 같은

통계조사에 대한 관심은 단순히 홍미거리 정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조사 결과는 본래 물질대로 활용

사회통계조사에 대한 냉소적 태도를 견지하는 측과 달리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측에서도 생각해봐야 할 문제점이 많다. 일반적으로 사회통계조사는 정책결정이든 전략·기술적 판단이든 합리적 의사결정이나 평가 등을 위해 실시한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문제점은 우선 조사결과가 본래의 목적대로 충분히 활용되지 않는 점이다. 조사결과는 단지 언론에 공개하여 홍보, 선전을 위한 1회용으로 활용된다. 그 결과 조사결과는 경쟁자에게 넘어가 결국 경쟁자가 조사해야 할 것을 대신해주 는 격이 된다.

두번째 정보독점에 대한 비판 때문에
조사결과를 전적으로 공개하는 경우다.
그러나 조사결과는 조직의 특정한 의사
결정·집행단위에서 전략·전술적 차원에
서 참고해야 할 때가 있다. 그럴 경우 조
직에서 불가피하게 조사결과의 공개 단
위나 시기를 한시적으로 제한해야 할 필
요가 있다. 단지 정보독점에 대한 비판을
우려하여 조직 내외에 조사결과를 발표
하고, 결국은 조직의 이해와 상충되는 결
과를 가져오는 경우를 본다. 공개되지 않는
조사결과도 많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조사는 조사일 뿐' 이란 무용론

세번째는 여론조사 악용과 조사무용론에 대한 위협이다. 예를 하나 들면, 얼마 전에 끝난 지방자치제 선거의 경우 시행 과정에서 정치적 논란이 아주 많았다. 그 과정에서 6·공 때 여야 합의로 지방자치 실시를 약속해놓고 노태우 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연기를 발표한 적이 있다. 그리고 곧바로 국민들이 연기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보처를 통해 발표했다. 그로부터 약 1년 후 경향신문사에서 동일 사안에 대해 조사를 해본 결과 국민들은 지자체 연기에 대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쟁점사안에 대한 찬반 의견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기의 필요성만 일반매체를 통해 집중 홍보한 직후 조사를 하여 정부의 지자체 연기를 국민여론으로 정당화시킨 경우다.

또 다른 예는 작년 여름에 철도노조 파업에 대한 여론조사 발표를 들 수 있다. 조사의뢰자도 밝히지 않은 이 조사는 정부 방침에 유리한 결과를 유도하는 설문구성으로 노조에 대한 정부의 강경대처를 여론이란 이름으로 정당화시키고 있다. 이런 조사 결과들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수긍하기 힘들다. 문제는 이와 같은 여론조사의 악용에 대해 '조사는 틀릴 수밖에 없다', '조사는 조사일 뿐이다'는 식의 조사무용론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다.

다수 의견이 민심이라는 단순논리

네번째는 여론조사에서 다수를 민심 즉 천심으로 읽는 해석문제다. 민심을 정확하게 조사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적어도 대중사회에서 정보조작이 가능한 점을 고려하면 더 그렇다. 국가보안법 폐지나 개정에 대한 여론조

사를 할 경우를 예를 들어보자. 적어도 국가보안법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은 어제 오늘에 형성된 것이 아니고 6·25를 거치면서 역대 정권 아래 균형되고 이성적인 논의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서 형성됐다. 그러다가 어느 날 문민정부가 들어섰다. 그러나 그 문민정부에서도 국가보안법에 대한 공정하고 이성적인 논의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설사 문민정부 하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해도 결과는 그 이전 냉전체제에서의 의식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국가보안법 개폐와 같이 쟁점이 되는 여론조사는 상반된 주장에 사전에 충분히 공론화가 됐는지를 생각해야 하며, 그리고 조사에서도 단순한 태도나 의견의 다수뿐만 아니라 왜 그런 의견이나 태도를 갖게 됐는지 의견형성 과정도 살펴야 한다. 민심은 천심이라는 말은 현안에 대한 대중의 합리적 판단에 대한 믿음일 것이다. 그러나 그 판단을 하는 민(民)이 대중사회에서는 선택적 정보를 갖는 것이 현실이고, 그 정보 또한 사안에 따라 통제될 수 있는 개연성이 항상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만약 다수 의견이 곧 민심이라는 단순 논리로 다수가 원하는대로만 정책이 나아가면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그렇게 되면 바람직스럽지 못한 결과를 만나게 될 것이다.

마케팅 기법의 대중추수주의 경계

정치인이나 사회지도자는 아무리 다수의 의견이라도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면 합리적 대안을 찾아 사회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끌어가야 한다. 이것이 곧 경영인과 다른 태도다. 경영인은 사안에 대해 가치판단을 굳이 할 필요가 없다. 다만 특정 다수의 욕구를 찾아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상품을 만들어 이윤을

추구하면 된다. 그런 의미에서 경영인이 생각하기에 바람직한 가치관의 지향을 갖는 소비자 대상의 상품을 만들어놓고 다른 사람들도 그와 같은 가치관을 갖도록 만들어 궁극적으로 그 상품이 소비가 되도록 시도하는 것만큼 무모한 것은 없다. 이미 그 경영인은 더 이상 경영인이 아니다.

그러나 정치활동이나 사회운동은 이윤 추구가 최고선인 경영과는 다르다. 그럼에도 요즘 많은 정치인이나 사회지도자 중에는 여론조사가 나오면 표나 지지를 의식하여 다수쪽의 유권자 요구를 충족 시켜주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런 경우 마케팅 기법이 문제의식 없이 수용된 결과다. 이런 정치인이나 사회지도자들에게는 바람직한 사회상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다. 다만 다수가 원하면 그것을 따른다. 이보다 무책임하고 비전 없는 정치인은 없다. 우리는 이런 문제의식에서 대중추수주의라는 용어를 기억할 필요가 있다.

여론조사를 바로 읽는 능력 길러야

요즘 사회운동에서 사회여론조사를 이용하여 할 때 혹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을 토대로 해서 하고 싶은 말은 먼저 여론조사를 볼 때 적어도 국민의 합리적 판단력을 믿고, 정보가 통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루어진 국민의견은 존중해야 한다. 그리고 정략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정당화시키기 위해 여론을 이용하는, 국민에 대한 교만한 태도는 버려야 한다. 그러나 '현실'에 안주하라는 것은 아니다. 현실인식에 바탕해서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상에서 지적한 여러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초보적이나마 여론조사를 바로 읽을 수 있는 능력부터 길러야 할 것이다.

아시아와 함께 하는 일본의 시민운동

장소영

참여연대 국제부장이다.

아시아에 위치했으면서도 아시아가 아닌 듯한 나라가 있다. 소위 선진국 그룹 G7의 대열에 서 있는 유일한 아시아 국가, 다른 건 몰라도 경제적으로 아시아를 주무르고 있는 나라, 일본이다. 일본은 근대화 과정에서부터 후발산업국가로서 구미와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기 위하여 시종일관 「탈아입구(脫亞入歐)」 정책을 추진해왔다.

이런 일본에, 세계경제구조의 밑바닥에서 굶주리고, 독재에 신음하고, 봉건제의 잔재에 고통받는 아시아인과 함께 하는 시민단체들이 있다. 그중 하나가 1973년 설립돼 이제 성년의 나이를 넘어선 「아시아·태평양 자료센터(이하 PARC)」다. PARC의 설립 배경에는 「AMPO」라는 영문잡지가 있다. 계간지인 이 잡지는 1969년에 발간됐는데, 당시 베트남전쟁 반대운동을 해온 일본 시민운동그룹들이 만든 것이다. 그후 반전활동에 대한 일본의 운동을 알리고, 일본과 해외 각국들의 경제적 지배의 확대에 대한 분석과 토론으로 그 중심을 엮기게 된다.

「AMPO」는 점차 일본과 아시아의 개발과 연관하여 학자들과 여러 사람들을 연결함으로써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 제3세계에서 벌어지는 투쟁과 맺 수 없는 막대한 매개로 자리잡았다. 아울러 아시아의 여러 운동단체에게 화합될 뿐만 아니라, 고위 지도층들도 빼놓지 않고 읽는 잡지 목록이 되었다. 이렇듯 「AMPO」를 발행해온 사람들이 활동을 증진시키고, 확대·고무하기 위하여 학자와 활동가들이 함께 하는 단체를 세우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PARC」이다.

PARC의 조직과 활동

PARC에는 현재 670명의 언론인, 활동가, 학자들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재정은 철저히 회원들의 회비와 출판물의 판매, 그리고 PARC 자유학교의 학비를 통해 자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활동을 분야별로 나누어보면 다음과 같다.

자발적 그룹의 조사·연구

PARC는 주요한 이슈에 대하여 광범위한 연구팀을 조직하여 활발한 연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연구의 목적은 민족의 투쟁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이며, 세계의 구조적인 문제를 심도있게 다룬다. 연구활동은 자발적인 그룹들에 의하여 진행되며, PARC는 이를 조직, 조정하며, 연구결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활동한다. 예를 들어 일본정부의 「원조」가 수혜국의 대중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그 결과를 PARC의 출판물에싣고, 동시에 대중모임과 상업적 매체를 조직하여 이를 널리 알린다. 그리고 이는 정부나 기업을 상대로 로비와 압력을 행사할 때 효과적으로 이용된다.

자료 정보은행 운영

PARC는 300여 종의 정간물과 다른 출판물을 기본으로 일본과 해외운동단체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정보은행을 운영하고 있다.

「AMPO」와 「Oruta Tsushin」

PARC는 계간 영문잡지 「AMPO」와 월간 일본어 잡지 「Oruta Tsushin」를

PARC

Office : 402, Seiko Bldg., 1-30 Kanda-Jimbocho
Chiyoda-ku, Tokyo 101, Japan
Mailing Address : Box 5250, Tokyo international, Japan
Tel : 81-3-3291-5901 Fax : 81-3-3292-2437
Email : PARC@Geo2

발행하고 있다. 「AMPO」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일본과 관련된 운동을 해외에 전하고, 「Oruta Tsushin」는 해외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일본 국민에서 알린다. 이런 정간물들은 PARC의 정책, 일본의 민중운동과 아시아를 비롯한 제3세계의 민중운동간에 직접적인 연대를 발전시키기 위한 활동을 벌여나가는 데 있어 공개강좌와 더불어 중요한 매체가 되고 있다.

그 외에 시청각 매체로서 영화, 슬라이드, 비디오를 제작하고, 여러 이슈에 관한 팜플렛 등도 발행하고 있다. 또한 필요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파하기 위하여 상업 매체와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자유학교’ 교육활동

PARC는 「자유학교(Freedom School)」를 운영, 두 가지 형태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하나는 언어학습과정으로 민(民)-민(民)의 국제적인 대화를 목적으로 영어, 스페인어, 인도네시아어를 가르치고 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일본의 해외원조, 폐미니즘, 아시아의 경제 등 PARC의 활동이 주제가 되는 세미나 형식의 학습과정이다. 1983년, 교과과정이 30여 개로 늘어났고 이를 통해 교육 받는 사람들만도 연평균 400명 정도에 이른다. 그리고 1990년대에 들어서는 훗

카이도와 나가노, 큐슈 지방에도 자유학교를 열게 됐다. 자유학교의 교육과정은 일본사회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일본의 시민들이 행동에 나서게 되는 기반이 되고 있다.

국제 네트워크 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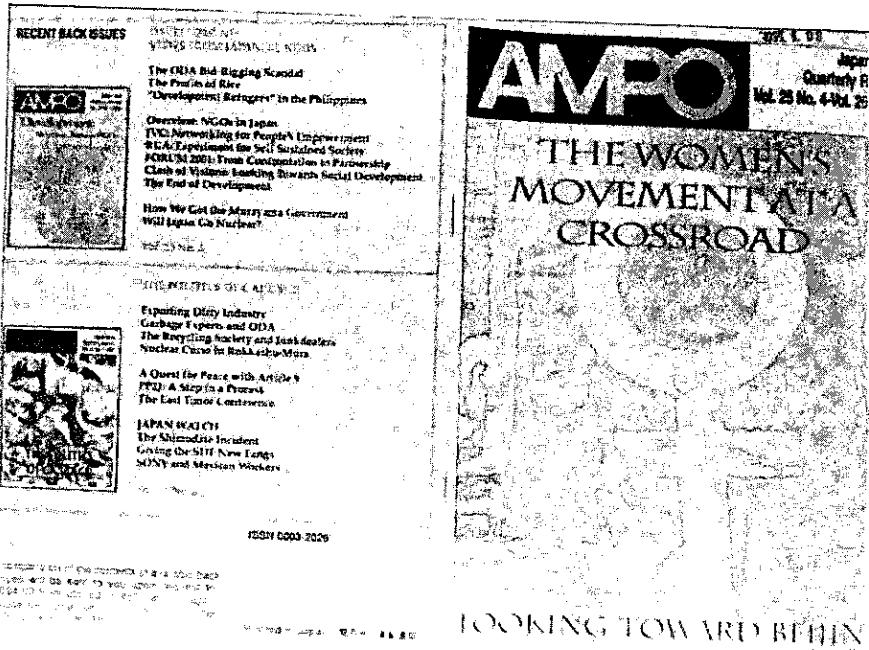
PARC는 노동, 농민, 종교 등 여러 사회분야의 운동간의 국제적인 교류활동을 촉진하고 있다. 조사를 포함한 이 활동은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형성, 발전시키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PARC의 성장과정과 현재

PARC가 창립된 후 처음 10년 동안 출판물 발간사업 및 민(民)의 직접적인 교류와 연대사업은 놀랄 만한 발전을 거듭했다. 동시에 일본 자본의 해외진출이 더욱 확대되면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민중들에게 미치는 영향도 커졌다.

1980년대에 들어서 아시아의 몇몇 국가에서는 “아시아를 보자!”라는 정책이 채택되고, 일본에서도 이는 대중적인 담론으로 떠올랐다. 일본의 정부와 기업은 함께 “아시아의 가난한 사람들을 돋게 해달라”는 구호를 외쳤다. 그러나 이 캠페인은 또 다른 한편으로 일본 국민들에게 “아시아는 가난하고 더럽고 뒤떨어져 있다”라는 이미지를 심어 주었다.

수많은 돈이 ‘경제적 원조’라는 이름으로 아시아로 보내졌다. 그리고 아무도 원조가 아태지역의 가난한 다수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었는지는 의문을 갖지 않았다. 그러나 ‘원조 캠페인’은 삶과 정의를 위해서 싸우는 가난한 아시아의 사람들에게 거의 도움을 주지 못했다. 원조는 아시아의 민중을 위해서보다는 일본의 자본과 이에 결탁한 독재세력을 살찌웠다. 무토 이시오 교수는 그의 보고서에서



PARC의 모태였던 영문 잡지 「AMPO」, 현재도 아시아의 여러 운동단체 및 고위 지도층들에게 힌트되고 있다.

‘원조 이데올로기’는 새로운 ‘대동아 공영권’의 핵심을 이루게 되었다”고 분석했다. 비민주적인 원조정책은 수혜국에게 빈곤을 해결한다는 명목 하에 얼마나 많은 폐해를 가져오는지는 우리의 경험에서도 찾을 수 있다.

이 시점에서 2기 단계로 접어든 PARC는 연대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아시아 사람들과 일본인이 함께 하는 국제포럼을 개최했다.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아시아 활동가들과 함께 한 자리는, 진정으로 아시아의 민중을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 일본국민이 아시아와 조화를 이루며 살 길이 무엇인지를 생생하게 느끼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기회였다.

이 포럼에서 국제연대활동은 일본사회의 근본적인 변화와 불가분한 관계이며, 일본의 다국적 기업이 벌이는 공해수출 산업 등 일본의 해외진출과정에서 끼친는 폐해 사례가 보고됐다. 그리고 ‘해외 개발원조(ODA)’ 프로그램에 따라 많은 일본의 젊은이들이 난민·발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해외원조활동이 늘어나게 됐는데, 그 돈과 봉사가 누구에게 얼마나 쓰여졌으며 어떻게 도움이 됐는지에 대한 민간단체의 참여와 감시의 필요성이

요청됐다.

아시아 각국에서 모인 참석자는 생생한 보고를 통해 많은 사실을 전해줬다. 예를 들어, 필리핀에서 일본자본에 의한 나보타 어항 건설이 어민들의 삶과 터전을 파괴한 것, 방글라데시에서의 원조가 군사독재세력 주머니로 들어가 그들의 독재를 더욱 강화한 결과를 초래한 것 등이다. 이는 일본의 원조가 아시아의 민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해를 끼친 결과를 넣고 있다는 현실을 보여주었다. 새로운 ‘대동아 공영권’은 아시아의 시민과 일본의 시민들을 갈라놓고, 서로 평등하고 조화롭게 공존할 수 없도록 했다.

PARC는 이런 구조에 대하여 국내
적·국제적 측면을 연구·분석·홍보하는
활동과 민(民)의 교류·연대 활동 강화,
네트워크 형성, 그리고 함께 살 수 있는
대안 이론과 프로그램을 생산하는 활동
을 전개했다.

바햐흐로 3기 단계에 접어든 PARC는 1-2기의 구상과 사업을 더욱 확대, 강화하고 있다. 그리고 정부와 이제까지와는 다르게 관계를 맺고 있다. 그 배경은 첫째, 국내적으로 자민련 일당 독재가 '93년 선거에서 무너지고 새로운 정국을 맞았기 때문이다. 그 결과로 3기 단계에서는 정부와 함께 대체로 긍정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고, 둘째, 국제적으로 탈냉전시대가 도래하면서 정부와 민간단체의 관계가 변한 데 있다. 정부기관과 민간단체는 정책대안 생산을 증진하기 위하여 활발한 대화를 시작하고, 정부정책에 대한 시민단체의 직접적인 개입이 시작됐다.

PARC는 정기적으로 주요 이슈에 대한 캠페인 활동을 펴는데, 근래에는 세계은행(IBRD)과 국제통화기금

(IMF) 개혁 국제운동을 위해 시민조직과 노동조합, 소비자협동조합 등이 모인 'Japan Bretton Woods Coalition(이하 Coalition)' 구성에 초기부터 참여하고 있다. Coalition은 아태지역 정상회담(APEC)에도 영향을 미쳐 지역정부의 자유무역을 촉진하고 있다. 그 대표적 사례로는 필리핀의 네그로스(Negros) 섬과 이루어지는 바나나 직

거래 운동이다. 또한 PARC는 일본의 풀뿌리 단체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일, 즉 예를 들자면 1995년 코펜하겐 사회개발정상회담 참여 등이다.

한편 PARC는 APEC에 대한 민간의 대응이나 대안적인 민(民)의 무역, 국경을 넘어선 시민의 연대를 위해 지난 '89년부터 시작된 아시아 지역의 '민중 21세기 계획(People's Plan for

해외시민단체

일본 ATJ와 필리핀 네그로스 섬 주민들 간의 민간연대

바나나로 맺은 국제연대

김소영

참여연대 '언어의 오작교' 회원이다.

1980년대 초반, 남부 필리핀 네그로스(Negros) 섬에는 심각한 기아가 발생했다. 국제 석탄 가격의 하락이 사탕수수를 일도착하고 있는 이 섬 주민들을 가난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던 것이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15만 명에 달하는 아이들이 일상적인 굶주림에 허덕였다.

섬 인구의 2%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섬 전체의 땅 98%를 소유하고 있는 네그로스 섬은 아직도 봉건체제가 남아 있는 대표적인 곳으로, 대부분의 주민들이 사탕수수 농장의 임금노동자로 일했다. 토지가 없는 그들은 마음대로 식량작물을 재배할 수도 없었고, 설사 재배한다손 치더라도 상품시장을 중간상인들이 장악했기에 작물을 직접 소비자에게 팔 수도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들의 유일한 수입원인 사탕수수의 가격이 하락하자

정해진 수순처럼 기아에 허덕일 수밖에 없었다. 결국 그들은 일본의 몇몇 민간단체에 구호를 요청하기에 이른다.

네그로스 섬의 사정을 알게 된 일본의 여러 단체들은 원조와 토지무소유에 대한 주제를 놓고 섬 주민들과 심층적인 토의를 벌여나갔다. 섬 주민들은 비록 굶주리고는 있지만 정작 자신들에게 필요 한 건 '물고기'가 아니라 물고기를 잡는 '어망' 임을 인식하고, 자립의 토대를 모색하고 있었다. 자립경제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환금작물을 재배하여 수출하는 길뿐이었다. 이에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일본의 소비자운동이 팔을 걷어부치고 뛰어들게 된 것이다.

일본의 소비자운동, 'ATJ'

일본의 1960년대 학생운동 세대들은

이후 시민운동의 지도자로 탈바꿈하여 가정주부들의 조직화에 나섰다. 정치의식이나 정치적 경험이 없던 주부들은 미나마타병과 갖가지 산업병들로 인해 화학약품과 관련한 건강문제에 관심을 갖게 됐고, 특히 1980년대 초반의 격렬했던 반핵운동은 건강과 환경 문제에 대한 대중적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따라 소비자운동은 일본 중산층 주부들을 중심으로 유기농법 및 무농약식품에 대한 토의를 이끌어냈고, 무해한 식품을 원하는 소비자들의 욕구에 맞춰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라는 단체를 결성하기에 이르렀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농산물 제조업자 및 농부들과 직접 관련을 맺고, 기존의 마케팅 체계를 뛰어넘어 생활협동조합 회원을 중심으로 센터를 통한 직접 운송방식으로 물품들을 분배했다. 또한

21st Century'이라는 네트워크 운동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PARC에게서 배워야 할 우리

경제적으로는 한국이 일본에 뒤지지만 문화적으로는 우월하다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 정서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 자신을 성찰해보면 우리 정부의 정책도 일

본의 '탈아입구(脫亞入歐)'와 너무 닮아 있음을 깨달을 수 있다. 아시아를 이웃으로 보기보다는 점령해야 할 시장으로 보는 것도, 아시아의 다른 나라에 비해 경제력을 갖게 된 지금 우리 기업이 아시아의 형체·자매에게 하는 잘못도 너무 닮았다.

그것은 단지 정부나 기업의 잘못으로 그 책임을 돌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국가는 올타리를 넘어선 시민의 연대로 아시아의 미래에 대안을 제시하는 구체적인 활동이 요구되고 있다. 이제 우리는 아시아의 시민들과 함께 이웃으로서 살아가려는 노력을 해야 할 때다. 이 점에서 PARC의 활동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이 많다.집여

1989년 각각 22만 명의 회원들을 보유하고 있는 4개의 주요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서로 연합하여 'Alter Trade Japan' (이하 ATJ)을 발족시켰다. 이 ATJ에서는 소비자들로 하여금 생산자가 누구이며 그 농작물이 왜 중요한지, 생산자들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게 소비자운동의 핵심임을 인지하고 이를 널리 실천했다.

ATJ와 네그로스 섬 주민들의 연대

이러한 뿌리를 가지고 있는 ATJ와 네그로스 섬 주민과의 만남은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형식의 민간연대의 출발을 의미했다. 그러나 상품 수입이나 수출에 대해 아는 것도, 경험도 없는 국적 다른 이들이 함께 모여 서로의 필요를 채우고 연대의 의의를 되새긴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다.

먼저 이들은 긴 토론과정을 통해 ATJ의 수입품목을 야생의 녹색 바나나인 Balangon으로 정했다. 이 Balangon은 필리핀인들의 주식도 아니고 현지인들은 먹지 않을 뿐 아니라 농약을 치지 않는 야생작물로 Dole이나 Delmon 바나나보다 훨씬 맛이 있고 무엇보다도 껍질이

두꺼워 운송이 용이했다. 품목을 정한 뒤 1년에 10톤의 바나나가 수입됐고 점차 그 양도 늘어났다.

그러나 늘어나는 양 만큼이나 무수한 장벽이 앞에 버티고 있었다. 그렇지 않아도 바나나는 썩기 쉬워 수송이 힘든 데다 하는 일마다 검열하고 과잉보호(?)하는 네그로스 섬 군부의 방해공작이 여간이 아니었다. 게다가 하늘도 무심하게 태풍이 섬 전체를 휩쓸어가 작물 피해를 보는 것도 다반사였다.

'인간지사 새옹지마'라고 위기를 또 다른 도약의 발판으로 삼을 줄 아는 이들은 아키노 정부 하의 군부의 방해공작을 전단을 통해 일본 회원들과 언론에 알려 의식화, 조직화의 기초를 닦았다. 그리고 네그로스 섬 현지 답사를 통해 비록 가끔 바나나가 곰팡이가 피어 있더라도 무농약 무공해 식품을 위해서라면 인내하고 기다리며 자연재해를 당한 네그로스 섬 주민들을 지원하는 일을 모색할 수 있는 연대의 기초를 마련했다.

알차고 값진 결실들

ATJ와 네그로스 섬 주민들의 연대를 통해 수입되는 바나나의 양은 약 150여

톤으로 그 총량은 많지 않으나 이 대안적인 무역을 통해 네그로스 섬에는 작으나마 경제붐이 일었다. '오늘'의 시간 개념으로 살아 미래를 대비하지 않았던 네그로스 섬 주민들은 이 일을 통해 5개년 개발계획을 세우게 됐고, 수입도 두세 배 가량 늘었다. 또한 바나나 포장을 위해 45명의 풀타임 노동자들이 가난한 동료, 이웃을 위해 자기의 수입을 양보하고 100명의 동료들과 함께 일하는 등 공동체의식도 많이 확산됐다. 한편 ATJ도 이를 통해 질적·양적 확대를 이루었고, 회원들의 신뢰와 대중적 파급의 기초도 마련할 수 있었다.

ATJ는 이 사업을 상업적 목적이 아니라 연대운동의 일부로서 시작했다. 그러나 이 사업이 상업적 자생력을 가져 서로에게 도움이 되도록 힘을 쏟고 있다. 이제 ATJ는 네그로스 섬에서의 활동을 토대로 5개년 개발계획을 평가하고 자생 가능한 생산과 재생가능한 대체 무역에 대한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상품이 우선이 아니라 사람이 우선임을 잘 알고 있는 ATJ는 비슷한 뜻을 가진 단체와의 연대도 희망하고 있으며, 이들의 작은 시작이 새로운 사회를 향한 힘찬 연대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집여

"시프린스호 피해보상, 정부가 나서야"

박계성
LG그룹 소속 유조선 해양오염 여수·여천 시국민
대책본부' 사무국장이다.

얼마 전 우리는 아주 충격적인 뉴스를 접했다. 유조선 시프린스호가 좌초돼 여수·여천 앞바다 인근 어장은 물론 남해안 전역을 죽음의 바다로 만든 것이다. 언론은 며칠간 떠들썩하게 사고 및 피해 소식과 방제 작업을 보도했다. 그리고 두 달 여 지난 지금 더 이상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는 않고 있다. 다만 피해보상에 합의를 못본 당사자인 여수·여천 주민만이 그 '죽음의 바다'를 바라보며 시름에 잠길 뿐...

사고회사와 보험사는 엄청난 경제력과 법률적 대응력으로 사고수습과정을 느긋하게 자기논리로 끌고가는 반면 어민들은 막상 본인들이 처음 당한 일이라 법률적 지식과 요구를 관철시켜내는 대응능력이 상대적으로 턱없이 부족하다. 이에 따라 어민들은 대형 기름유출사고가 날 때마다 국제법의 높은 문턱에 가로막혀 헤아릴 수 없는 어장피해에 울고, 터무니없는 보상액에

LG 그룹 유조선 시프린스호의 기름유출사고로 피해를 입은 여천군 일대 어민들이 사고회사인 LG그룹 호유해운과 보험회사의 고압적 자세에 크게 분노하고 있다. 사고 발생 이후 지금까지도 가해자와 피해자 간에 단 한 번의 보험협상 테이블도 마련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LG측은 간접경로를 통해 "관행어업은 인정하지 않는다", "피해자료가 눈으로 확인되는 것만 보상하겠다"는 입장만 되풀이할 뿐 정작 피해자인 주민들을 교묘하게 위협하고 있다. 그래서 주민들의 심정은 착잡하기에 앞서 화병으로 몸져 누울 지경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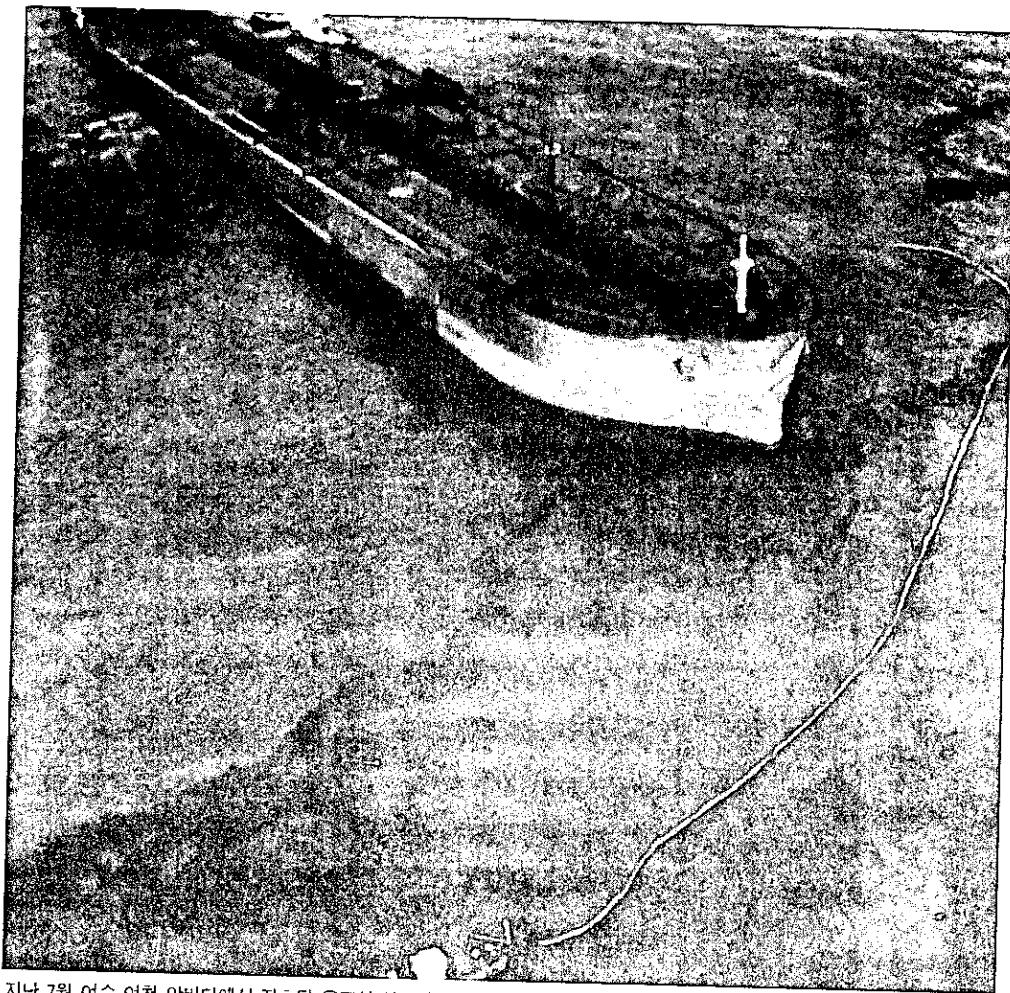
어민들은 피해보상을 둘러싼 분쟁을 '고래와 새우의 싸움'으로 비유한다. 사고회사와 보험사는 엄청난 경제력과 법률적 대응력으로 사고수습과정을 느긋하게 자기논리로 끌고가는 반면 어민들은 막상 본인들이 처음 당한 일이라 법률적 지식과 요구를 관철시켜내는 대응능력이 상대적으로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어민들은 대형 기름유출사고가 날 때마다 국제법의 높은 문턱에 가로막혀 헤아릴 수 없는 어장피해에 울고, 터무니없는 보상액에 다시 울음을 삼켜야 했다.

정부도 지방자치단체도 의회도 아무도 어민의 입장에서 올바른 보상과 수습을 위한 일에 나서지 않는다. 국내 5대 대그룹 LG의 눈 뿐에 나지 않겠다는 심사라면 참으로

비열한 작태가 아닐 수 없다. '당사자간 해결원칙'이라고 하는 허울좋은 논리도 협상 당사자간의 힘과 조건의 균형이 맞을 때 가능한 일 아니겠는가? 지난 '93년 9월 금동호 기름유출사고 때 수협을 중심으로 피해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어장 4,500ha에 931억 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밝혀졌으나 소송결과 보상액은 35억 원만 인정됐다.

LG의 보험가입사인 영국의 P&I보험사는 그나마 '수박 겉핥기'식으로 진행된 지난 협동 피해조사에 마지못해 참여하면서도 "참여는 하겠으나 피해보상을 위한 관련 규정이 있는 만큼 조사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분명히 못 박고는 금동호 사고시 피해축소의 혁혁한 전과(?)를 세운 협성감정(대표 김준철)과 한국해사감정(대표 김석기), '김&장 법률사무소' 소속 최종현 변호사 등의 전문가를 대리인으로 사서 제2의 금동호식 보상을 시도하고 있다. LG 호유해운은 사고 초기 "4,000억짜리 해상사고 보험에 들어 있으므로 주민보상은 충분히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언론에 지속적으로 유포시켰다.

LG그룹의 속셈은 초기의 분출하는 비난여론을 일단 무마해놓고 시간이 지난 후 어느 정도 외부의 관심도가 떨어지면 어민들의 기준이 아닌 별개의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최소의 보상으로 실속을 챙기겠다는 것이었다. 이런 상태가 계속 유지된다면 어민들은 적절한 피해보상을 받기는커녕 너



지난 7월 여수 여천 앞바다에서 좌초된 유조선 시프린스호

큰 좌절감에 빠져들고 말 것이다. 법률지식도 힘도 없는 어민들이 사고 초기부터 변호사와 전문가를 동원해 보상을 축소하려는 가해자 쪽에 맞서고 있는 동안 관련 공무원과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정부는 기름제거 등 2차 오염을 막는 것은 물론 LG그룹이 주민 보상에 성실히 임할 수 있도록 사태에 대한 최종적 책임을 져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일차적 의무를 갖는 정부는 삶의 터전을 잃고 생계조차 막막한 어민의 입장에서 피해조사와 보상에 억울함이 없도록 철저히 가해 기업체를 관리해야 한다. 바다가 오염되면 근해 어민들만 피해를 입는 것이 아니고 생태계 파괴라는 국가적 손실을 수반한다는 인식을 통해 보상문제와 생태계 복원 문제에 적극 개입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즉시 '정부 전문조사단'을 파견하여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는 지역의 사정을 잘 아는 유능한 지역 해양전문가들로 구성되며 비용은 전적으로 LG그룹이 부담해야 한다. 아울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해양 생태계 복원대책을 LG측에 요구해야 한다.

한편 외국 보험사의 숫자놀음에 놀아나는 보상이 아니라 '피해자 보호 우선' 원칙에 입각한 보상논의가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개입하여 사태수습을 관리해야 한다. 힘없는 어민과 오만한 외국 보험사가 직접 협상하는 방식은 적절한 어민보상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 LG그룹이 먼저 어민피해를 선 보상한 후 보험금은 LG가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으면 되는 것이다. 가해자는 LG그룹인 만큼 보험사 뒤에 숨어 미온적으로 대처하지 말고 보다 책임적 자세로 피해보전과 생태계 보전에 나서야 할 것이다.

정부는 기름제거 등 2차 오염을 막는 것은 물론 LG그룹이 주민 보상에 성실히 임할 수 있도록 사태에 대한 최종적 책임을 져야 한다. 바다가 오염되면 근해 어민들만 피해를 입는 것이 아니고 생태계 파괴라는 국가적 손실을 수반한다는 인식을 통해 보상문제와 생태계 복원 문제에 적극 개입해야 할 것이다.

너와 내가 ‘우리’로 함께 가자!

권순우
참여연대 홍보실장이다.

이번 호부터 ‘참여칼럼’ 난을 마련한다.
이 난은 시민운동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들을 담을 것이다.

난, 아니에요

서명·시위 참가 권유에 흔히 하는 말이다. 행동에 대한 거리감 만큼이나 성도의 말은 풍성하다.

“어쩜, 그럴 수 있니?”, “그러고도 민주주의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애초에 구조적 모순으로 꽉 찬 나라라고…, 솔직히 학교에서 배우는

것은 이상일 뿐이라고…; 어쩌면 좋으니 어디부터 달라져야 하는 거야”.

나는 몰라요. 아니 알고 싶지도 않아요.
나는 모른다. 4,000억 원이 얼마나 되는 돈인지.

그러나 금융실명제에 대해서는 안다.
숨길 것이 없어 그랬는지는 몰라도

투명한 선진사회로의 한걸음이라며 국민 모두가 박수쳤었다. 그리고 약간의 불편을 감내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문제는 4,000억 원이라는 액수의 실체감도, 4,000억 원에 대한 뉴스 보도와 유비통신에도, 뭘 못 느끼는 둔한 내게 있다. 희망이라는 것이….
관심을 갖고 알려고 하면 할수록 날아가려 해서 내 무의식이 나를 보호하나? 무성한 말로 엄청난 흥분을 하던 친구들이 “종합청사 앞에서 범시민단체가 연대해서 시위를 했대, 진상을 규명하라고”라는 한 친구의 말에, “그게 무슨 소용있어”라고 이구동성이다. “괜한 차량만 통제하고 교통체증만 가중되겠다, 애”

아무도 더 이상 그 얘기는 하지 않았다.

우 조교와 박용상 판사

“그 판사 한 번 보고 싶어”

“별일이다 애”

“왜?”

“응, 그냥… 궁금해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는 사람인지”

“하긴”

“아마 여동생이나 애인(?), 아니 확실히 딸은 없을 것 같애”

“그건 네 생각일 뿐이지. 누가 아니 기막힌 애처가에 좋은 아빠일지”

이것도 말뿐, 나와 너는 우 조교가 아니니까 그녀가 운이 조금 나빴을 뿐이라고 생각하고 싶어진다.



왜 우리는 아니라며 밤을 빼는가

“웬 시위…, 머리에 두른 띠들…,
싫어” “저 붉은 색…, 악쓰는 모습”
“나는 평화적인 모습의 외국시위를
본 적이 있어. 아주 좋더라”

시위와 태모는 극히 소수의 치우친
어떤 것을 선호하는 한정된(?) 투사의
몫이었다. 그래도 지성인이고 깨어
있다고 생각은 했지만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거리가, 거리가 느껴졌다.

그들은 우리와 달라.

하여간 대단한 데가 있어. 무엇이
진지함을 무모한(?) 용기로 엮어낼까.

시민사회와 시민운동

그들이 그렇게나 열심히
운동(?)했지만 크게 달라진 건 없었다.
아니 문민시대는 왔다. 그들만의 힘은
아니었고 관심없던 많은 나와 너,
민초들이 도저히 못 참겠다고 했을
때였다.

이젠 운동권은 더 이상 과거의
모습으로 존재하진 않는다. 행동하지
못해 부끄럽고, 치열하지 못해 무기력해
보였던 많은 생활인들, 그들의 호응
없이는 상징적인 존재로 존재할
뿐이라는 것을…: 바보 같은 민초들의
굼뜬 움직임의 위력을 확실히
알았으므로.

나는 꿈꾼다

빛과 질서가 있는 나라. 바보 같고
순한 이들이 불편없이 성장하고 제
몫을 다하는 곳. 내게 소중한 것과 네게
소중한 것이 존중되어지고 대화가
자유로운 곳. 그래, 이젠 먹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 이제 밥은
그래도 먹을 만하잖아.

우린 서로 상대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삶이 되도록 눈을, 시야를 넓힐 수
있어야 돼.

아직도 우리는 무력하다?

“참여? 우리가 어떻게”

“변화? 희망을 가지라고?”

“난 운동권이 아니에요”

방관자도 동조자라고 생각할 줄은
알지만 새삼 모든 것을 끄집어낼 때는
반발심(?)이 공처럼 훈다. 때를 아는
것도 지혜라고. 나 또한
힘들었노라고…: 사는 것을 욕으로
느끼며 나름대로의 최선은 다했노라고.
모두가 숨죽였을 때 그대들의 그
기상은 밤 하늘의 별처럼
아름다웠노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는 너무나 큰 괴물인데 나는
너무나 평범해. 내겐 소중한 것들이
주변에 너무 많아. 생업에 충실해야 돼.

남산의 안중근의사 기념관

흘리는 눈물을 감추고 싶었다.

“사나이로 태어나서 겨우 저격범으로
끌내다니…, 좋은 죄로는 못을 안
만드는 법인데”

막연히 갖고 있던 선입견이 깨지는
순간이었다. 조선 사나이의 기개가
아직은 시퍼렇게 살아 있음을 보이기
위하여 이등박문을 저격한 그분의
영혼이 유물과 함께 그 안에 거하고
있는 듯했다. 머리만의 사고는
현장에서의 느낌과 차이가 꽤 컸다.

개인으로만 머물지 말자

내가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생업에 충실한 것일 게다.
달라졌다면, 아니 바란다면, 할 수 있는
만큼만 내가 속한 사회에서 역할을
하자는 것이다. 내 능력만큼, 그
중에서도 할애할 수 있는 만큼. “난…,
아녜요” “나는 모른다”하면서도 계속
비평하자. 말로써라도 멈추지 말자.
포기하지 말자.

그리고 “시위해도 소용없더라”라고

느꼈으면 느낀 대로 말하자. 단
개인으로만 머물지 말자. 한 번쯤
친구를 넘어서 어떤 단체건, 모임이건
소속되어보자. 가십 차원이 아닌,
목소리를 모아 작은 울림을 내어보자.
한 번, 두 번, 그렇게.

그리고 안 가보았다면 남산의 안중근
의사 기념관도 한 번 가보자. 그리고
느껴보자. 머리 속 생각과 현장에서의
느낌의 차이를.

너와 내가 우리로

너의 모습이 나의 다른 모습임을…:
큰 몸짓으로 그들이 하려 했던 많은
말들을…:

무모한(?) 용기라고, 약간은 열등감을
느끼며 자신들을 위로했던 그 날들이…:
실은 자신과의 만남을 두려워했던
나였음을 인정하자. 지나쳐서 싫다고
외면했던 이면에 그들의 희생이
안쓰럽고 죄스러웠음의 또 다른
표현이었다고 궁정하자.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목표와 꿈은
하나. 마찬가지임에랴.

어느 누구, 몇몇의 희생이 아직은
기개가, 진리가 살아 있다고 증거되는
방판은, 그런 짓은 이제 그만하자.
함께 가자. 함께라면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크고 또 해냈었잖아.

각자가 조금씩 나누어 자신의 뜻을
진다면 나족한 목소리로 가만히
되내어도 그 울림은 우주를 울릴 게다.
희망이 풀풀 날릴 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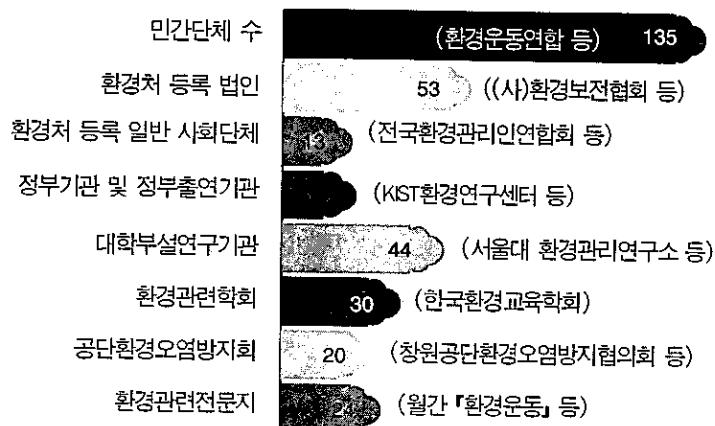
참여의 방법은 열렸다. 참여가
무엇인지도 안다. 이제 시작만 하면
된다. 각자 자기 가정의 일에,

자기 동네의 일에, 자기 직장 내의
일에, 그리고 우리 모두의 관심사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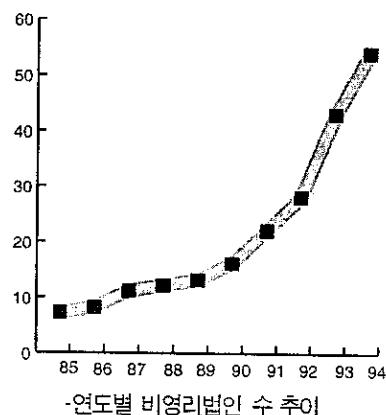
아마도 대한민국은 정말 괜찮은
나라라고 모두가 이야기하기
시작할 걸.

환경운동단체 수는 얼마나?

1. 현재 각 환경단체 현황('94년 현재)



2. 환경청에 등록된 비영리법인은 53개 ('94년 현재)



민주·시민단체 알림난

민예총 문예아카데미 가을강좌 열려

민예총에서는 오는 9월 15일부터 문예아카데미 가을강좌를 연다. 이번 강좌에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일반강좌 외에도 전문강좌를 개설한다. 내용과 일정은 다음과 같다.

일반강좌:-대중문화의 새로운 이해(매주 월요일), -한국문학의 동향과 쟁점(매주 화요일), -문화론적으로 본 서구미술(매주 수요일), -영화로 본 영화사(매주 목요일), -근대에서 탈근대로의 사상 탐구(매주 금요일), -건축:도시건축 읽기(매주 토요일), -특별강좌:한국미의 탐구(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 강의기간은 9월 15일~12월 12일까지(각 강좌별 12회)이며, 강의시간은 저녁 7시~9시다. 장소는 서울 낙원동 문예아카데미 강당이며, 수강료는 8만~8만5000원, 정원은 각 강좌당 100명 내외다.

전문강좌:-시창작반(매주 화요일, 9월 26일 개강), -소설창작반(매주 수요일, 9월 27일 개강), -문화비평반(매주 목요일, 9월 28일 개강), -영화비평반(매주 수요일, 9월 27일 개강), -영화제작반(매주 화요일, 9월 26일 개강), -춤이론(매주 금요일, 9월 1일 개강), -벽화, 환경미술의 연구와 실천(매주 금요일, 9월 15일 개강)

· 모집요령-벽화, -춤이론반을 제외하고 공히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지원동기서가 필요하며, -시창작반은 시 3편, 소설창작반은 소설 1편, 시나리오(일부) 1편, 작품구상 1편 중 택일, -영화·문화비평반은 비평문 1편, -영화제작은 자신의 작품기획 1편이다. 모집기간은 9월 20일까지며, 수강료는 37만~40만 원, 장소는 문예아카데미 강당이다(문의전화 745-6471, 763-4787).

환경운동연합 전문강좌

환경운동연합에서는 '환경과 경제'라는 주제로 환경전문 강좌를 연다. 강좌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좌내용:-환경문제의 원인과 성격(9월18일), -경제법칙과 환경파괴(9월 25일), 환경규제의 효율성(10월 2일), -경제논리를 인용한 환경영책(10월 9일), -그린 GNP(10월 16일), -그린 라운드(10월 23일), -산업구조와 환경문제(10월 30일), -에너지 이용과 환경문제(11월 6일), -경제성장-환경보전-소득분배의 고리(11월 13일), -지속 가능한 사회와 경제(11월 20일), -환경친화적 기업경영(11월 27일)

· 강의시간은 저녁 7시~8시 30분이며, 장소는 프란치스코 수도회 교육회관. 참가비는 3만 5,000원(개별강좌당 5,000원)이다(문의전화 735~7000).